

# 국·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(1차)

우리 구 관내 국·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(경작, 적치물 설치 등)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하려고 하였으나,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4. 10.

##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

1. 공고내용 : 국공유재산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처분 사전통지
2. 공고기간 : 2020. 4. 10. ~ 2020. 4. 30.(20일간)
3. 무단점유 현황

(단위 m<sup>2</sup>, 원)

| 위치         | 소유자        | 행위자      |    | 위법사항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성명       | 주소 |                 |    |
| 청룡동 160-1  |            | 금정구     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168-1  |            | 금정구     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13 | 청룡동 604-24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14 | 청룡동 604-25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15 | 청룡동 615-1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17 | 청룡동 615-2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1  | 청룡동 615-3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21 | 청룡동 615  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22 | 청룡동 618  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| 청룡동 604-23 | 청룡동 619-1  | 국(국토교통부) | 미상 | 무단경작 및 적치물 설치 등 |    |
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상기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국유재산법 제72조(변상금의 징수),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, 제82조(벌칙)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(변상금의 징수), 제83조(원상복구 명령 등), 제99조(벌칙)에 따라 변상금 부과, 불법시설물 철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(국유재산은 일천만원 이하)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(☎051-519-46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